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에 대한 특례 규정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2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명옥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8.
3. 회부연월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 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2(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2024.3.20.)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정 갈등을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

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교육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²⁾ 산하의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장³⁾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2025년 4월 2일, 서명옥 의원안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해당 대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 의안번호 제2207845호,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2)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3)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의안번호 제2209376호

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서명옥 의원안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심의기구로 규정된 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등 「고등교육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근 의결('25.4.2.)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와 내용이 상충되고, 정부조직법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수급추계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